자곡동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청원

심 사 보 고 서

2023. 8. 30.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7. 4. 이청수(강남구 자곡동 288-1) 등 19명

나. 상정의결

-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3. 8. 30.)

“ 채택 - 의견서 첨부 ”

2. 청원요지

○ 본 청원은 자곡동 286~299번지 총 19지본에 대한 서울특별시 공시 제2009-368호, 제2013-21호(2013년1월24일) 관련으로,

○ 상기 고시가 집단취락지구 규제를 대폭 강화해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동시에 건축행위를 지역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 고시 전에는 대부분 박물관·식당·사무실·사옥 등 연립주택을 건축한 지역에, 소주 잔여대지를 단독주택지로 제한한 것은 실효성에 있어 의문이며 주위 여건에 반함.
- 반면 인근 지역은 근생 주택, 연립주택 등 건축이 가능하고 활성화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음.
- 지붕 모양 및 담장 설치 불허 등의 규제로 주민의 창의적 건축행위와 사생활 침해 및 방범이 취약하여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림.

- 모든 주민의 건축행위가 중단되어 SRT 복합개발지, 행복주택 단지와 근접한 훌륭한 위치임에도 그대로 방치되어 지역발전에 장애가 됨.

○ 수서역 인근의 고품격 지구단위 수립, 고용 창출이 가능한 지구단위 수립을 간곡히 바라며, 혜택을 바라는 것보단 옆 마을과 같은 조건 형성을 바람

3. 소개 의견요지(소개의원: 이호귀)

○ 본 청원은 자곡동 286~299번지 총19지본 관련으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고시에 따른 해당 지역 건축행위 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함.

○ 청원에 따르면 고시 전에는 대부분 연립주택·근생시설을 건축해왔던 지역인데, 고시로 인해 잔여 대지에 단독주택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변 여건에 맞지 않고, 지붕 모양이나 담장 설치 등에 대한 규제로 사생활 침해나 방범 취약 등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여 이를 고려하면 상기 고시의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 또한 인근 지역이 상기 고시의 규제 상황이 적용되지 않고, 근생주택, 연립주택 등 건축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정책의 형평성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 특히, 이러한 사유로 주민의 건축행위가 중단되어 SRT 개발지나 행복주택 단지와 근접한 이점이 있는 지역임에도 잔여 대지 등이 방치되고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면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바,

○ 우리 구 의회에서 해당 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검토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소개함.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청원법」,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문성)

1) 청원의 배경

○ 청원인의 대상지인 강남구 자곡동 286~299번지(이하 '자곡동 대상부지')는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에 해당되는 지역에 해당함.

○ 취락지구는 토지의 용도지구 중의 하나인 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주거지)를 정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에 의해 지정됨.

○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구분되는 바, 자곡동 대상부지는 집단취락지구로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설정된 지구임.

-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주거지 밀집화를 유도함으로써 난개발을 막고, 추후 개발이 될 경우에도 하나의 지역으로 묶어서 계획적인 관리하기에도 용이한 장점이 있음.
-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 구역에서의 규제보다 완화된 건폐율과 용적률 등이 적용될 수 있음.

○ 아래 표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토지A와 토지B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강한 규제를 받게 되어 기본적으로 건축이 불가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이더라도 토지B처럼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주택 및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음.

<표> 구 분

구 분	토지 A	토지 B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 여부	집단취락지구 지정 안된 경우	집단취락지구 지정된 경우
건축가능	건축불가	주택, 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청원인은 「청원법」 제4조제5호[1]에 따라 집단취락지구인 자곡동 대상부지

1) 「청원법」 제5조(청원사항) 국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의 건축물 허용용도 등을 변경할 것을 청원한 것임.

2) 청원에 대한 검토

가. 법적 환경 변화

○ 「국계법」 제139조[2]에 근거한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3] 관련 별표 4가 개정되어(2023.7.24.) 집단취락지구내 건축물 용도변경 뿐만 아니라 건축물 허용용도, 불허용도의 변경에 있어서 그 권한이 서울특별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위임되었음.

○ 「서울시도시계획조례」 별표4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과 관련된 자치구의 권한이 확대된 바, 종전에는 건축물의 권장 용도만 자치구에서 변경할

---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등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2) 「국계법」 제1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권한은 그 일부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 ·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 · 도지사의 권한은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 도지사는 권한의 위임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 · 도의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의하여 시 · 군 · 구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 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④ ~ ⑥ (생략)

3)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권한의 위임)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별표 4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 중 별표4의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었으나, 해당 용도지역 내 건축물의 허용용도와 불허용도도 자치구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자치구의 권한이 강화되었음.

○ 다만,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허용용도와 불허용도는 자치구 위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바, 이는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라 요구되는 관련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통신 시설 등)의 확보 없이 단순 사업성 위주의 무분별한 용도변경의 우려가 예상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바, 이러한 조치는 강남구와 같이 집단취락지구의 쾌적한 거주환경 유지를 도모하고자 노력하는 자치구의 기대에 못미치는 실망스런 개정사항이라고 하겠음.

나. 집행부 의견

○ 자곡동 대상부지의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자연녹지지역, 집단취락지구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신축시 단독주택만 가능하며, 담장 설치는 불허를 원칙으로 하되, 안전사고 예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1.2m이하의 수목식재 등 친환경소재로 설치가능하고, 경사지붕의 설치는 권장사항이라고 집행부는 밝히고 있음.

○ 건축물 용도변경은 서울시 결정사항이었으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2023.7.24.)에 따라 허용용도 변경이 자치구에 권한 위임되어 열람공고 등의 절차 이행후 구(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자곡동 대상부지의 근린생활시설로의 허용용도 변경에 대하여는 취락지구 지정 당시 이용현황,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취지와 목적 및 주변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자곡동 대상부지 전체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 후 지구단위계획(허용용도)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결　론

○ 검토하건데 「청원법」, 「국계법」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와 집행부의 의견 등을 고려해 볼 때, 집행부가 자곡동 대상부지 건축제한 완화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본 청원은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 아울러, 청원인의 청원내용과 같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자치구의 사무 위임 범위 및 내용이 강화되는 만큼, 금번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이외에도 개정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내용이 변경된 용적률 상향, 자치구 권한 위임사항, 획지 변경 및 신설·폐지 관련 사항 등'에 대한 면밀한 세부 기준 정립을 위한 기초조사가 집행부 차원에서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파급효과 또한 예측하여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집행부에 위임된 사항은 그 집행 절차에 있어서 우리 강남구의회 청취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국계법」 제13조제2항), 그에 따른 '관련 조례 및 제도 개편'에 관한 계획 마련 및 이에 관한 의회 보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집행부 의견(도시환경국장: 최재준)

○ 취락지구 교수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에 의거 2009년 9월 24일 취락지구로 지정됨

○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토지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3년 1월 24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됨

○ 취락지구 교수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자연녹지지역 집단취락지구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신축 시 단독주택만 가능하며 담장 설치시는 불허를 원칙으로 하되 안전사고 예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1.2m 이하의 수목 식재 등 친환경 소재로 설치 가능하고 경사지붕의 설치는 권장사항임

○ 건축물 용도변경은 서울시 결정사항이었으나 2023년 7월 24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허용용도 변경이 자치구의 권한위임되어 열람공고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었음

○ 교수마을이 근린생활시설로서의 허용용도 변경에 대하여는 취락지구 지정 당시 이용현황,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취지와 목적 및 주변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교수마을 전체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 후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7.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 의: 본 청원 관련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올해 7월 24일 개정되어 허용용도 변경이 가능한 게 자치구로 위임되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한 영향이 구민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인지 궁금

○ 답 변: 우리 구 내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38개, 구 면적의 45% 가량. 지구단위계획 내의 허용용도, 불허용용도, 권장용도의 구별이 당초 서울시에서 결정하다가 조례 개정으로 자치구로 위임된 거. 지구단위 내용은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계획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의 규제를 자치구에서 관리 가능하게 되어 구 전체적으로 많은 구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음.

8. 토론 요지: “없음”

9. 심사 결과: “채택-의견서 첨부”

10.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1. 기타 사항: “없음”

붙 임 “자곡동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

의 견 서

【복지도시위원회】

○ 청원명 : 자곡동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청원

○ 처리하여야 할 기관 : 강남구청장

○ 채택의견

본 청원은 관련 법령과 집행부의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집행부가 자곡동 대상부지 건축제한 완화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본 청원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자치구의 사무 위임 범위 및 내용이 강화되는 만큼, 금번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이외에도 개정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내용이 변경된 용적률 상향, 자치구 권한 위임사항, 획지 변경 및 신설·폐지 관련 사항 등'에 대한 면밀한 세부 기준 정립을 위한 기초조사가 집행부 차원에서 집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23. 8. 30.

청 원 요 지 서

접 수 번 호	233		접수년월일	2023. 7. 4.
청 원 인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288-1		
	성 명	이청수		
소개의원	이호귀		소속 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건 명	자곡동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청원			
소관 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요 지

* 본 청원은 자곡동 286~299번지 총 19 지본에 대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68호, 제2013-21호 (2013년 1월 24일) 관련으로,

* 상기 고시가 집단취락지구 규제를 대폭 강화해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동시에 건축행위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 고시 전에는 대부분 박물관·식당·사무실·사옥 등 연립주택을 건축한 지역에, 소수 잔여 대지를 단독주택지로 제한한 것은 실효성에 있어 의문이며 주위 여건에 반함
  - 반면 인근 지역은 근생 주택, 연립주택 등 건축이 가능하고 활성화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음
  - 지붕 모양 및 담장 설치 불허 등의 규제로 주민의 창의적 건축행위와 사생활 침해 및 방범이 취약하여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림
  - 모든 주민의 건축행위가 중단되어 SRT 복합개발지, 행복주택 단지와 근접한 훌륭한 위치임에도 그대로 방치되어 지역발전에 장애가 됨

* 수서역 인근의 고품격 지구 단위 수립, 고용 창출이 가능한 지구 단위 수립을 간곡히 바라며, 혜택을 보자는 것보단 옆 마을과 같은 조건 형성을 바람.

청 원 서

ㅇ **청 원 건 명** : (자곡동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청원

ㅇ **청원의 취지** : 인근지역같은, 근생주택, 연립주택건축행위 가능하도록 청원드림

2023 년 6 월 20 일

위 청원인

주 소 : 자곡동 288-1

성 명 : 이 청 수 외 18 명

연 락 처 : 010-3713-8752

소개의원 : 이 호 귀 (인)

첨 부 : 연서자 명부 1부

청 원 소 개 의 견 서

청 원 건 명	지구단위계획 관련 주민 청원서		
청 원 인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288-1	
	성 명	이청수 [redacted] 생년월일	1952.07.29
소 개 의 원	이호귀 (인)		
소 개 년 월 일	2023. 06. 20		

소 개 의 견

* 본 청원은 자곡동 286~299번지 총 19 지번 관련으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고시에 따른 해당 지역 건축행위 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함.

* 청원에 따르면 고시 전에는 대부분 연립주택·근생 시설을 건축해왔던 지역인데 고시로 인해 잔여 대지에 단독주택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변 여건에 맞지 않고, 지붕 모양이나 담장 설치 등에 대한 규제로 사생활 침해나 방범 취약 등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여 이를 고려하면 상기 고시의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 또한 인근 지역이 상기 고시의 규제 사항이 적용되지 않고 근생 주택, 연립주택 등 건축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정책의 형평성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 특히, 이러한 사유로 주민의 건축행위가 중단되어 SRT 개발지나 행복주택 단지와 근접한 이점이 있는 지역임에도 잔여 대지 등이 방치되고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면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바,

* 우리 구 의회에서 해당 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검토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소개함.

지구단위계획 관련 주민 청원서

수신; 서울시 및 강남구청지구단위계획과

1, 서울특별시 고시 (가) 제2009-368 및 동 고시 (나) 제2013-21호 2013년1,24) 관련사항입니다 (자곡동286~299번지 총19지본)

2, 상기고시는 종전 집단취락지구에서 규제를 대폭강화함으로써 10년 넘도록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동시에 오히려 건축행위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있습니다 지구단위고시전 제1종 근린 생활시설에 속한 바있읍나다 현재 가장심한 1가구만 거주할수있는 단독주택으로 한하고있으며 또한 지붕모양 및 담장설치불허 등 규제가 심하여 주민의 창의적 건축행위와 사생활침해 및 방범이 너무취약 하여 삶의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있는 현상황입니다

3, 그러나 동지역은 고시전 이미 건물 대부분이 탄허박물관 및 식당 사무실 및 사옥등 연립주택이 건축되여 사용되고있었음에 소수 잔여 대지에 단독주택지로 제한함은 형편성에도 반할뿐아니라 그 실효성도 의문시되며 주위여건에 반하여 단독주택지로는 부적격함에 모든주민이 위에서 서술한바와같이 건축행위가 중단되여 지역 발전에 많은장애가 되고있는 현상황입니다
또한 SRT복합개발역사와 최단거리에위치하며 현재 SRT복합 개발이 진행되고있으며 행복주택아파트 와는 도로하나건너에 아주 근접한 훌륭한 위치임에도 그대로방치 되여있읍니다 만약 서울시나 강남구청에서 현장방문이 이루어진다면 단독주택지로 부적절함을 인지할수있을것입니다 현정부는 과거정부와 달리 서울시나 강남구청에서도 과거의 과도한규제을 풀어서 주민의생활에 불편를 해소해주는 정책을 펴주시는 것으로 알고있읍니다

4, 하여 바로같이붙어있는 본교수마을은 근린생활 및 다세대 근생주택 건축가능하며 음식점및 사무실등 연립주택이 활성화되여 있으며 이웃 쟁골마을 궁마을 또한 동일한 상황입니다
본지역은 불과 19지본(건축완료포함) 국한되여있어 이또한 옆지역들에반해 형편성 에 문제가 과하다고 사료되옵니다 위 마을과같이 최소한 근린생활 건축이가능하여 주민생활에 보탬이 될수있도록 청원 드리옵니다

5, 또한 서울시 수서SRT복합개발계획에 의하면 동지역앞에는 백화점 로봇산업거점지역 호텔및 오피스텔 아파트및 복합시설이계획진행 되는것으로 발표되여있어 이와함께 본지역은 강남수서역 인근의 고품격 지구단위를 수립하여 SRT복합개발과함께 고용창출의지역으로 (근린생활및 일반지역으로) 수립하여 주실것을 주민전원이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그동안개인적으로 혹은 몇몇주민등의 반복된 민원이 있었던거로 알고있습니다 동주민들은 혜택을보자는것이 아니고 옆마을과같은조건을 형성해달라는것입니다 요번만은 서울시나 강남구청의많은관심으로 주민불편이해소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6, 동지역의 현상황사진1부 및 주민전원 동의서1첨부 제출드리옵니다

동 지역 주민일동

2023 년 6월 일

<단미한정식당 (자곡동286번지) 3층건물>

<초원복집 식당 (자곡동 287번지) 3층건물>

<자곡동288-1번지-본인 소유(본대지는 일반주택으로만 허용되는 대지로 주위환경으론 주택을 지을수 없어서 명지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 진정인 이청수)>

<㈜로이스기계 (자곡동 288번지) 3층 사무실 건물>

<자곡동 289번지 나대지>

<자곡동 290번지>

<자곡동291-2번지>

<자곡동 291-1, 275번지>

<자곡동 274번지>

<청 원 인>

번호	성명	연락처	주소	관계	서명(날인)
1	남상옥	010-8336-1569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286	건물.토지주	
2	임정수	010-5265-1611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287	건물.토지주	
3	이청수	010-3713-8752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288-1	토지주	
4	진명호	010-3710-5953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288	건물.토지주	
5	임승규	010-2216-1545(사위) 윤 준 호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289 복동 선시가 지 평지 서로38.	토지주 112동 201	
6	강웅식	010-4924-4005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290	건물.토지주	
7	김염옥	010-5283-6473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291-2	건물.토지주	
8	홍준규	010-5266-3390 (홍수용(부)관리)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291-1	건물.토지주	
9	홍성한	010-5266-3390 (홍수용(부)관리)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275	건물.토지주	
10	최대영	010-8260-4109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274	건물.토지주	
11	장성태	010-5245-3553/장인호(부)010-8877-8657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292	토지주	
12	김경태	010-3710-8104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293	건물.토지주	
13	김소자	010-3715-6181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293-10	건물.토지주	
14	정승완	010-9790-7030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295	토지주	
15	김희선	010-3243-6558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296	건물.토지주	
16	김희선	010-3243-6558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296-1	토지주	
17	전임진	010-7931-1809 김승태(자)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298	건물.토지주	
18	전임진	010-7931-1809 김승태(자)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299	토지주	
19	김경태	010 3710 8104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271-2	토지주	
20					